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 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 - 제호, 발행, 게재사항, 발행부서 등
-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)
 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, 임기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 -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접수에 관한 사항
- 광고에 대한 사항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 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행·운영되던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안 제2조~제5조에서는 제호, 발행시기, 게재사항, 발행부서 등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,
 - 둘째, 안 제6조~11조에서는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,
 - 셋째, 안 제12조에서는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,
 - 넷째, 안 제15조에서는 광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발행·운영되던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정소식지로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